

제11절 복부·골반장기의 장애

1.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

장애등급	장애 정도
1급 8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-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65%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고도 이상인 자
2급 1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75%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인 자 - 장루와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- 장루를 가진 상태로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, 장루가 있으면서 카테터의 유지 또는 간헐적 도뇨(CIC)가 항상 필요한 자
3급 1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85%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경도 이상인 자 -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-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
4급 11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간헐적 도뇨(CIC)의 시행이 필요하며,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수축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자 - 간헐적 도뇨(CIC)의 시행이 필요하며,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과활동이 있으면서 배뇨근과 괄약근의 부조화 소견이 있는 자 -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

2. 인정요령

가. 복부·골반장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.

- (1) 소화기계의 외과수술에 따른 소화기 계통의 장애와 항암제, 방사선, 코발트조사 등 치료에 수반하는 장애 등의 발생에 대해서도 장애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인정한다.

- (2) 복부·골반장기 등의 수술후유증은 덤핑증후군, 맹관증후군, 유착성 장폐쇄, 유착성 복막염, 복벽탈장 등에 의한 장애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장애정도는 전신상태, 영양상태, 연령, 성별, 수술 후 경과, 예후, 원질환의 성질, 진행상 활동, 증상의 발현 정도, 치료의 필요성, 체중감소 및 일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한다.
 - (3) 난치병에 대해서는 그 발병의 시기가 불확실하고 또는 발병이 느리며 경과가 진행성에 있어서 대개의 질병의 임상질환이 복잡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인정에 있어서 객관적 소견에 기초해서 일상생활의 능력 등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한다.
 - (4)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거나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신상태, 수술 후의 경과, 원질환의 성질,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(5)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장루 또는 요루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. 다만,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 - (6)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공방광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.
 - (7) 카테터의 유지는 유치도뇨, 방광루, 경피적 신루술 등 신체 외부로 카테터를 유지하여 배뇨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나. 복부·골반장기질환의 증상 중증도(소견), 검사성적 및 일반상태에 따른 장애등급별 (1~3급)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(1) 1급: A표 1란의 소견이 있고, B표에 기재된 검사성적이 모두 고도 이상인 자로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
 - (2) 2급: A표 2란의 소견이 있고, B표에 기재된 검사성적이 모두 중등도 이상인 자로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
 - (3) 3급: A표 3란의 소견이 있고, B표에 기재된 검사성적이 모두 경도 이상인 자로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

<A표: 증상 중증도 구분표>

중증도	임 상 증 상
1	소화흡수 기능장애,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65% 이하로 감소된 경우
2	소화흡수 기능장애,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75% 이하로 감소된 경우
3	소화흡수 기능장애,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85% 이하로 감소된 경우

<B표: 검사성적 지표>

구 분	검사항목	단위	경도	중등도	고도
1	혈색소량(Hb)	g/dl	10 미만	8 미만	6 미만
2	알부민	g/dl	3 미만	2.5 미만	2 미만

<C표: 일반상태 구분표>

구분	일 반 상 태
1	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,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(가사, 사무 등)은 할 수 있다.
2	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있다.
3	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있다.
4	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.